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, 산재 인정될까?

(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490)

어떤 일이 있었나요?

2023년 9월 12일

한 배달 기사가 배달 중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잘못 보고 직진하다 차량과 충돌.



2023년 9월 14일

충돌 후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.



2024년 1월

유족이 산재 신청했지만 공단은 "신호위반이니 업무 재해 아님"이라며 거절.



2024년 12월

법원은 "과로와 업무상 상황에서 생긴 사고"라며 유족 손을 들어줌.

쟁점: 이건 과실일까, 과로 사고일까?

근로복지공단 주장

신호를 위반했으니 사고는 본인의 잘못. 법에 따라 보상할 수 없 다고 주장.

유족의 주장

배달이 너무 많아 피곤했을 뿐, 일부 실수였을 뿐이며 업무 중 사고라고 주장.

법원의 판단 요약

1. 배달 특성상 급박함 인정

업무 특성상 빠르게 이동해야 했고, 과 로 상태일 가능성 높음.

2. 하루 32건 배달

평균 시간당 4건 이상 배달하며 피로 누적됐을 것.

3. 실수는 있었지만 고의는 아님

집중력 저하 상태에서 신호를 못 봤을 가능성이 높음.



국가의 거절은 잘못!

법원은 이 사고가 과로와 배달 업무 중 생긴 것이라며 유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.